

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 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4장 접견과 서신

제18조【접견】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접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8조의2【서신】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8조의3【전화통화】①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료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9조【서신 등의 영치】수용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한

다.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 제5장 급여

제20조【급여】①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

②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1조【급여(개정 1995.1.5)】①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개정 1995.1.5.>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류 등의 자비부담(개정 1995.1.5)】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자비부담의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 제6장 위생과 의료

제23조【이발과 면도(개정 1995.1.5)】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제24조【운동 및 목욕】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5조【전염병예방】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26조【병실수용】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제27조【격리수용】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28조 【자비치료】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29조 【병원이송<개정 1999.12.28.>】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개정 1999.12.28.>

제29조의2 【의료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등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제30조 【임산부 등】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전문개정 1999.12.28.]

## 제7장 교육과 교화

제31조 【교회】 ① 삭제<1980.12.22.>

②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제32조 【교육】 ①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9.12.28.>

②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0.12.22., 1999.12.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제33조 【신문·도서의 열람<개정 1995.1.5.>】 ①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33조의2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 소장은 수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본조신설 1995.1.5.]

제33조의3 【집필】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②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장소, 집필한 문서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34조 【교육규정 등】 교육의 과목·시간과 신문·도서의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 제8장 작업

제35조 【작업】 ①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5.1.5.>

제36조 【휴일의 작업】 ①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9.12.28.>

②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 【작업의 면제】 수형자중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38조 【신청에 의한 작업】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제39조 【직업수입 등】 ①직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과와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999.12.28.>

제40조 【위로금, 조위금】 ①수형자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 제9장 영치

제41조 【휴대금품의 영치】 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5., 1999.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제42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개정 1995.1.5.>】 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1.5.>

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12.22., 1999.12.28.>

제43조 【영치금품의 환부】 ①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1999.12.28.>

③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교부

한다. 다만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1999.12.28.>

### 제10장 분류와 처우<개정 1980.12.22.>

제44조 【분류·처우 및 귀휴】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1.5.>

③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 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9.12.28.>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⑤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22.]

제45조 【규율 등】 ①수용자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6조 【징벌】 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2.22., 1995.1.5., 1999.12.28.>

1. 경고

2.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이내의 금치

6. 삭제<1995.1.5.>

7. 삭제<1995.1.5.>

8. 삭제<1995.1.5.>

9. 삭제<1995.1.5.>

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 달성을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1999.12.28.>

④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12.28.>

제47조 【징벌위원회】 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징벌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1.5., 1999.12.28.>

제48조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개정 1999.12.28.>】 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누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9.12.28.>

제48조의2 【징벌집행의 유예】 ①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누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

③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11장 가석방

제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96.12.12.]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12.]

제51조 【가석방심사<개정 1995.1.5.>】 ①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③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12.]

제52조 【가석방허가】 법무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12.]

## 제12장 석방

제53조 【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5.1.5.>

제54조 【석방시기<개정 1999.12.28.>】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 도달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제55조 【피석방자의 수용】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 등에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56조 【귀가여비 등】 피석방자가 귀가여비 또는 의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 교도소 등에서 대여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 제13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제57조 【사형의 집행】 ①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개정 1995.1.5.〉

②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시체의 가매장 등】〈개정 1999.12.28.〉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매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화장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제59조 【시체, 유골의 교부】 시체 또는 유골은 청구에 의하여 친족 또는 친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합장후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9.12.28.〉

제60조 【시체, 유골의 합장】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제61조 【시체의 해부】 수용자의 시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9.12.28.〉

### 제14장 미결수용

제62조 삭제〈1995.1.5.〉

제63조 【참관금지】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12.28.〉

제64조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65조 【미결수용자의 이발】〈개정 1995.1.5.〉 미결수용자의 두발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개정 1995.1.5., 1999.12.28.〉

제66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①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

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 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 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12.28.]

제67조 【작업과 교회】 ①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제31조·제35조 제1항·제36조·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5.〉

제68조 【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제69조 삭제〈1999.12.28.〉

부칙 〈제858호, 1961.12.23.〉

-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단기4242년 10월 18일 칙령 제243호 조선총독부감옥관제는 이를 폐지한다.
- ③본법시행 당시의 교도소, 소년교도소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본법시행 당시의 타 법령중의 형무소, 소년형무소 및 형무관은 본법에 의한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교도관으로 각각 설치, 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22호, 1962.12.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7호, 1973.1.1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②내지 ⑤생략
-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 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



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 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 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3289호, 198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6호, 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5호, 19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은 이 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으로 본다.

부칙 <제6038호, 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작업의 정지의 징벌이 결정되었거나 집행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개시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행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2조 【교도소 등의 순회점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순회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행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 이상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3조 【판사 등의 시찰】 ①판사 또는 검사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등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도소 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4조 【참관】 ①소장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의 참관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5조 삭제 <2000.3.28.>

제6조 【순회점검공무원에의 청원】 ①소장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7조 【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등】 ①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2000.3.28.〉

②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개정 1995.8.26., 2000.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

제8조 삭제 〈2000.3.28.〉

제9조 【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0.3.28.〉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 제2장 수용

제10조 【신입자의 인수】 ①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서를 그 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형의 집행절차】 ①미결수용자로서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집행지휘서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 서류를 교도소등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2조 【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3조 【유아인도】 ①소장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수용자에게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유아를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소장이 양육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14조 【전염병의 정의】 법 제9조·제25조 및 제27조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을 말한다.〈개정 1995.8.26., 2000.3.28.〉

제15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 소장은 교도소등에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격리병실 기타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할 적당한 시설에 격리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6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을 지휘한 기관과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1995.8.26.〉

제17조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8조 【목욕】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②여자인 신입자가 목욕하는 경우에 그의 계호를 위한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③제2항의 규정은 수용중인 여자의 목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8.26.〉

제19조 【신입자의 번호】 소장은 신입자의 번호를 지정하고 수용중 그 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옷깃 또는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제20조 【신원조사 등】 ①삭제 〈2000.3.28.〉



- ②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경찰서 기타의 공무소 또는 신입자의 연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8.26.〉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법원·경찰서 기타의 공무소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회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21조 【신입자의 수용】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입자 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8.26.〉

③소장은 20세 미만의 신입자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수용자의 신분장부】 ①수용자의 신분장부·수용자명부·만기력부는 수용후 3일 이내에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소장은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수용자 거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23조 【독거수용의 규율】 독거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하며 소환·운동·목욕·접견·작업·교회·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개정 1995.8.26., 2000.3.28.〉

제24조 삭제 〈2000.3.28.〉

제25조 삭제 〈2000.3.28.〉

제26조 삭제 〈2000.3.28.〉

제27조 【독거수용자의 시찰 등】 ①소장 및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소장의 지시를 받아 독거수용자를 시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

③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 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교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

제28조 【여자수용자의 시찰】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 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29조 삭제 〈2000.3.28.〉

제30조 삭제 〈2000.3.28.〉

제31조 【혼거수용】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0.3.28.]

제32조 【혼거수용의 금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3.28.]

제33조 【혼거수용의 기준】 혼거실에는 3인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5.8.26., 2000.3.28.〉

제35조 【혼거실의 대용금지】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0.3.28.〉

제36조 【거실앞의 이름표】 거실의 앞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상부에는 수용자의 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연월일을 각각 기재하되 상부의 난은 이를 가리어 두어야 한다.〈개정 1995.8.26.〉

제37조 【혼거실의 정원등의 표시】 혼거실에는 그 면적·정원 및 현재 인원을 기재한 수용표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5.8.26.〉

### 제3장 계호

제38조 【외부인의 출입】 교도관외의 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는 당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39조 【수용자의 계호등】 ①교도소등의 외문·출입구·거실·작업장 기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일시 개방하는 때



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 교도소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지정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고 받지 못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40조 【거실개방 및 출입】 교도관은 당해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의 참여없이 수용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지 못한다. 다만, 병실에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41조 【장애물의 금지】 교도소등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게 하거나 기타 제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개정 1995.8.26.>

제42조 【거실 및 작업장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용자의 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43조 【수용자의 신체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제44조 삭제 <2000.3.28.>

제45조 【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46조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개정 1995.8.26.>

②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5.8.26.>

③ 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47조 【강제력의 행사 등】 ①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없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도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48조 【천재·사변시의 조치】 ① 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소방 기타의 응급용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8.>

③ 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 기타의 응급용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작업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3.28.>

제49조 【일시석방】 소장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일시 석방하는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50조 【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①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송받을 교도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51조 【이송시의 남녀 구분 등】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여자수용자는 남자수용자와, 20세 미만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52조 【도주시의 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등의 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도주한 자가 숨을 만한 지방의 경찰서에 도주자의 사진 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53조 【도주시의 보고】 소장은 제52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주한 자를 체포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8.26.>

## 제4장 접견과 통신

제54조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8.26.>

제55조 【접견의 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56조 【접견의 횟수】 ①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58조 【접견시의 기록등】 ①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1.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
2.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접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접견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0.3.28.>

1. 범죄를 선동·조장하는 때
2. 증거인멸, 도주의 기도 등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
4. 기타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제59조 【접견의 장소】 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60조 【접견시의 외국어 사용금지】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61조 【서신발송의 횟수】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은 “서신발송”으로, “회”는 “통”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8.26.]

제62조 【서신의 검열】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법 제6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②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합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5.8.26.>

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신설 2000.3.28.>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3조 삭제 <1995.8.26.>

제64조 【공무소로부터의 서신】 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어온 문서는 이를 개봉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65조 【집필시간】 수용자의 서신과 문서 등의 집필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66조 【집필장소】 수용자의 서신과 문서 등의 집필은 집필실·거실 또는 작업장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67조 【집필한 문서 등의 영치 등】 ①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은 이를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집필후 외부에 발송할 것을 원하거나 소장이 기간 또는 분량을 정하여 수용자에게 그 소지를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을 수용중에 외부에 발송하고자 하거나 석방시에 가지고 나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3 제1항 각호 및 이 영 제6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문서 등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③소장은 다 쓴 필기구와 집필용지의 회수·폐기 등 집필용구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기타 수용자의 집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68조 【서신 등의 대서】 수용자가 서신·소송서류 기타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할 수 있다.〈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69조 【요금부담】 수용자의 집필용구의 구매비용과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자비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비부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집필용구와 우표를 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3.28.]

제70조 삭제 〈2000.3.28.〉

제71조 【석방시 서신의 교부등】 ①법 제18조의2 제5항 단서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서신의 내용이 법 제33조의3 제1항 각호 및 이 영 제6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3.28.〉

②소장은 서신 기타 문서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당해 수용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72조 【서신·접견시 참고사항의 기록】 소장은 서신의 검열과 접견의 참여에 있어 업무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 제5장 급여

제73조 【급여의류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급여의류와 침구의 품목·색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74조 【식기등의 급여】 ①수용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침구 외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식기 기타 물품을 급여할 수 있다.〈개정 1995.8.26.〉

②식기등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개정 1995.8.26.〉

③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치솔·치약·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75조 【의류등의 급여수량】 ①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 및 침구의 수는 1인에 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품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5.8.26., 2000.3.28.〉

②소장은 날씨·수용자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침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5.8.26.〉

③식기와 생활용품의 수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개정 1995.8.26.〉

④삭제 〈1995.8.26.〉

⑤삭제 〈1995.8.26.〉

제76조 【식기등의 정결】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식기는 특히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침구·식기 기타 물품은 세탁 또는 소독한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수용자에게 급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77조 【생활용구의 비치】 ①소장은 거실 또는 작업장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2000.3.28.〉

②거실·작업장에 비치하는 기구의 품목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개정 1995.8.26., 2000.3.28.〉

③거실과 작업장에는 비치된 기구의 품목, 수량을 기재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5.8.26., 2000.3.28.〉

제78조 【주식·부식등의 급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은 주식·부식·음료 기타 영양물로 하되 필요한 영양을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5.8.26.〉

제79조 【주식의 혼합】 ①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으로 한다.〈개정 1995.8.26.〉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1995.8.26.〉

제81조 삭제 〈1995.8.26.〉

제82조 【특식의 급여】 소장은 국경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급여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제83조 삭제 〈2000.3.28.〉

제84조 【환자의 음식물】 환자의 주식·부식 기타 영양물은 소장이 정한다.〈개정 1995.8.26.〉

제85조 【자비부담의류 등의 허가】 ①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겹옷을 제외한다)·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비부담 생활용품의 품목 및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86조 【자비부담의류 등의 종류】 자비부담의 의류 또는 침구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87조 【자비부담의류 등의 세탁 등】 ①자비부담의 의류와 침구는 적당한 때에 교환·수선 또는 세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교도소 등에서 자비부담의 의류 및 침구의 수선 또는 세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당해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8.26.>

제88조 【자비부담음식물의 종류 등】 자비부담음식물의 종류 및 분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개정 1995.8.26.>

제89조 【자비부담음식물의 검사】 자비부담의 음식물은 교도관의 참여 아래 의무관이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90조 【자비부담음식물의 식사】 혼거수용자의 자비부담음식물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식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91조 【자비부담음식물 등의 공급】 ①소장은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교도소 등의 직원회에서 경영하는 판매소에서 이를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②자비부담음식물 및 의류 등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8.26.]

### 제6장 위생과 의료

제92조 【거실의 청결 등】 수용자는 그가 수용된 거실의 청소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93조 【수형자의 이발 등】 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

②삭제 <1995.8.26.>

[전문개정 1979.8.29.]

제94조 【화장품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에게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8.26., 2000.3.28.>

제95조 【목욕의 횟수】 수용자의 목욕횟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소장이 정한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의 5일에 1회이상, 10월부터 5월까지의 7일에 1회이상

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96조 【수용자의 운동 등】 ①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8.26.>

②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제97조 【수용자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삭제 <2000.3.28.>

제98조 【전염병의 예방조치】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한 날부터 1주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99조 【전염병의 예방접종 등】 소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00조 【자비부담음식물의 공급금지】 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자비부담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01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9.8.29.>

제102조 삭제 <2000.3.28.>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②소장은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개정 1995.8.26.>

제104조 【중환자의 통지】 소장은 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05조 【일반병원 이송의 조치】 ①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를 외부의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



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병원에 이송된 자가 입원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06조 【임산부 등의 정의】 법 제30조에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출산후 60일 미만의 자를, “노쇠자”라 함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3.28.]

## 제7장 교육과 교회

제107조 【교회의 일시】 교회는 휴업일에 한다. 다만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8.26.>

제108조 【특별교회】 병실 또는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교회는 그의 거실에서 한다.<개정 1995.8.26.>

제109조 【작업면제자의 교회】 소장은 법 제3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이 면제된 수형자에게는 수시로 교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110조 【사면 등의 의식】 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하거나 상장 등을 수여하는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11조 【사망시 교회】 소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와 연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형자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제112조 【피교육자의 문구 대여】 소장은 교육을 받는 수형자에게는 거실에서 교육에 필요한 문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제113조 【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동회·연극 또는 영화관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26.>

제114조 【라디오 청취 등】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송설비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의 청취와 텔레비전의 시청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교화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 제8장 작업

제115조 【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16조 【작업의 종류와 직업훈련】 ①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17조 【작업의 고지】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18조 【작업과정의 표준】 수형자의 작업과정은 당해 수형자의 작업성과 작업상여금의 계산비율 및 작업시간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작업과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작업은 당일의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8.26.]

제119조 【소년수형자 등의 작업과정】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노쇠자·병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5.8.26.]

제120조 【신청에 의한 작업】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21조 【도급작업의 인가】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22조 【작업성적의 검사】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26.]

제123조 【작업의 휴업】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12월 31일을 말한다.<개정 1995.8.26.>

[전문개정 1979.8.29.]

제124조 【위로금 등의 지급절차】 소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25조 【위로금 등의 지급】 소장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 등을 대조·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 제9장 영치

제126조 【영치물품의 조치】 소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의 휴대품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27조 【영치물품의 보관】 소장은 영치물중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기타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28조 【영치물품의 매각 등】 ①소장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영치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②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29조 【영치금사용의 허가】 소장은 수용자가 그 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형제 또는 자매의 부조 기타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130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문구·인지·우표·우편엽서 또는 수용중이나 석방시에 필요한 한도내의 금전과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제131조 【영치금품의 사용 등】 ①소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허가된 금품을 교도소 등에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영치금의 출납·예탁·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교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2.31.>

[전문개정 1995.8.26.]

제132조 【금품교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 기타 수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33조 【차입물품 등의 검사】 ①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하여 온 물품과 교부를 허가한 물건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②소장은 의무관으로 하여금 음식물 및 약품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34조 【음식물의 취급】 음식물에 관하여는 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비밀소지물품의 처리】 ①소장은 수용자가 비밀히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하며 영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물품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피석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5.8.26.>

제136조 【영치물품폐기처분의 조치】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수량과 처분의 이유 및 연월일을 수거·폐기부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37조 【유류품의 교부】 ①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의 교부를 받을 자가 원격지에 있을 때에는 그의 청구에 의하여 유류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8조 【귀속된 금품의 사용범위】 소장은 법 제42조 제3항, 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품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피석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26.]

## 제10장 귀휴와 징벌

제139조 【귀휴자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법 제4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2000.3.28.>

②귀휴자는 귀휴중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귀휴자가 소속하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6.>

제140조 【징벌위원회의 소집】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41조 【징벌위원장의 대리】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2조 삭제 <1995.8.26.>

제143조 【징벌혐의자의 수용】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 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2000.3.28.>

제144조 【징벌의 신고자】 징벌은 당해 소장이 이를 신고한다.

제145조 【징벌의 집행】 ①징벌은 징벌의 신고가 있는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 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3.28.>

③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개정 1981.5.20., 1995.8.26.>

④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0.3.28.>

제146조 【징벌집행중의 건강진단】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건강상태를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5.20., 1995.8.26.>

제147조 【징벌집행의 정지 등】 ①소장은 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하는 당일에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법원 또는 검사의 소환에 의하여 법정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 기간중 징벌의 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3.28.]

제148조 【징벌집행종료와 진단】 소장은 금치를 받은 자가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5.20., 1995.8.26.>

제149조 【징벌기간의 계산】 ①징벌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이송으로 인하여 인수한 소장은 인수후 3일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일부부터 집행개시 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8.26., 2000.3.28.>

②소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정지일부부터

집행개시 전일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3.28.>

제150조 【피호송자에 대한 징벌】 수용자가 이송 도중에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징벌한다.<개정 1995.8.26.>

제151조 【징벌의 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신분장부 및 징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5.20., 1995.8.26.>

## 제11장 가석방

제152조 삭제 <1996.12.31.>

제153조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등】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형성적 심사결과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개정 1996.12.31.]

제154조 【가석방신청의 절차】 ①소장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가석방심사신청서에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 판결문등본, 형집행지휘서의 등본, 범죄경력조회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서에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55조 【가석방의 절차 등】 소장은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한 후 본인에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56조 【가석방심사 등】 가석방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5.20.]

제157조 【가석방자의 준수사항】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제158조 【가석방자의 재범보고】 소장은 가석방된 자가 형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 제12장 석방

제159조 【석방예정자 상담 등】 소장은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 전 3일 동안 석방예정자 거실에 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상담·지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28.]

제160조 【만기석방자의 사전조사 사항 등】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1조 【석방자의 행형성적 등 통보】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할 자의 성격 및 행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그를 인수하여 보호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2000.3.28.〉

제162조 【석방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의 보호를 한국갱생보호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9.8.29., 1995.8.26.〉

제163조 삭제 〈1995.8.26.〉

## 제13장 사망 및 사형의 집행

제164조 【사형집행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체를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수를 풀지 못한다.〈개정 1995.8.26.〉

제165조 【수용자 사망시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시체를 검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수용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의무관은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 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③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기타 병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신분과 성명 및 검시 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66조 【사망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병력 및 사망연월일시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67조 【시체의 인도 등】 소장은 법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시체를 가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하거나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

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전문개정 1995.8.26.]

제168조 【시체의 가매장】 ①소장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 등의 묘지에 가매장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2000.3.28.〉

②시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소장은 시체를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개정 2000.3.28.〉

제169조 【시체·유골의 합장】 ①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석을 세워야 한다.〈개정 1995.8.26.〉

②삭제 〈1995.8.26.〉

## 제14장 미결수용

제170조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수용】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8.26.〉

제171조 【미결수용자중 공범자의 분리수용】 ①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 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를 다른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 관련된 자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③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72조 【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①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②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3조 【미결수용자의 사망등의 통보】 미결수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때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제174조 【미결수용자의 작업 등】 소장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등의 밖에서 하는 작업에 취업시킬 수 없다.

[전문개정 1995.8.26.]

제175조 【경찰서유치장】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에 설치된 미결수용실에는 수형



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제176조 【외부의사의 진찰 등】 형사소송법 제34조·제89조·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8.26.〉

부칙 〈제4128호, 1969.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7호, 1979.0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3호, 1981.05.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6호, 1995.0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12호, 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2호, 19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82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6759호, 2000.03.28.〉

이 영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독일 행형법

### 제1장 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은 행형시설에서의 자유형 및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자유형의 집행

#### 제1절 원칙

제2조 【집행시 준수사항】 자유형의 집행은 수형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하에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재범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의 상태】 ① 수형중의 생활은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유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유박탈에 의한 유해한 결과는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형의 집행은 수형자에게 자유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수형자 지위】 ① 수형자는 그의 처우의 구체화 및 행형목적의 달성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서 수형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는 이 법에 규정된 그의 자유제한에 복종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형시설의 안전유지 또는 중대한 질서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한만을 수형자에게 과하여야 한다.

#### 제2절 처우의 계획

제5조 【수용절차】 ① 입소절차에는 다른 수형자가 참여하지 못한다.

② 수형자는 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지를 받는다.

③ 입소 후에는 수형자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하며 시설의 장 또는 수용담당관을



면접하도록 한다.

제6조 【처우조사, 수형자의 참여】 ① 입소절차 후 수형자의 인성검사 및 생활상태의 조사를 실시한다. 수용기간을 고려하여 그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그 조사는 수용중에 있는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석방 후에 사회복귀를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까지 행한다.

③ 처우계획은 수형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제7조 【처우계획】 ① 수용절차를 근거로 하여(제6조) 처우계획을 수립한다.

② 처우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쇄 또는 개방시설에의 수용.
2. 사회치료시설로의 이송.
3. 수용집단 및 처우집단의 할당.
4. 직업교육, 계속교육 또는 재교육조치 및 작업배치.
5. 평생교육과정의 참여.
6. 특별지원조치 및 처우조치.
7. 집행의 완화.

8. 석방준비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③ 처우계획은 수형자의 개선정도 및 인성조사의 결과와 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처우계획은 적정한 기간동안 고려되어야 한다.

제8조 【이송, 인도】 ① 수형자는 집행계획과는 달리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다른 권한 있는 행형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1. 수형자의 처우 또는 석방 후의 그의 사회복귀가 이송에 의해 증진되는 경우.
2. 이송이 집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② 수형자는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다른 행형시설로 인도될 수 있다.

제9조 【다른 사회치료시설로의 이송】 ①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특별한 치료수단 및 이러한 시설의 사회적 지원이 제시되는 경우 수형자는 그의 동의에 의하여 사회치료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이러한 수단 및 지원이 그 시설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재수용될 수 있다. 제8조 및 제85조는 이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송에는 사회치료시설의 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0조 【개방 또는 폐쇄시설에서의 집행】 ① 수형자가 개방시설에의 수용을 위한 특별요건을 충족하고 특히 수형자가 자유형의 집행을 면하려 하거나 또는 개방시설에서의 수용을

범죄행위로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자신의 동의에 의하여 개방행형시설 또는 개방시설에 수용한다.

② 그 밖에는 수형자는 폐쇄시설에 수용한다.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폐쇄시설에 수용하거나 그곳으로 재이송할 수 있다.

제11조 【행형의 완화】 ① 행형의 완화를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수형자가 행형시설 밖에서 교도관의 감독하에(외부작업) 또는 감독없이(자유작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형자가 하루중 어느 특정 시각에 교도관의 감독하에(동반외출) 또는 감독없이(단독외출) 행형시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러한 완화는 수형자가 자유형의 집행에서 이탈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형집행의 완화를 남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수형자의 동의에 의하여 허용한다.

제12조 【특별한 사유에 의한 동반외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동의없이 동반외출이 허용된다.

제13조 【구금중의 휴가】 ① 수형자는 1년중 21일 한도 내에서 구금중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제2항은 이에 준용한다.

② 휴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최소한 6월 이상의 형집행중에 있었던 경우에 허가한다.

③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선형하는 미결구금 또는 기타의 자유박탈을 포함하여 10년간의 집행중에 있었던 경우 또는 개방시설에로 이송된 경우에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개방시설에의 수용이 적합한 수형자가 특별한 이유로 폐쇄시설의 행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방시설에의 수용을 위해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⑤ 휴가에 의하여 형집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14조 【행형의 완화 및 휴가의 지시 취소】 ① 행형시설의 장은 행형의 완화 및 휴가를 위하여 수형자에게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② 행형시설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완화 및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장이 추후에 발생한 사정에 기초하여 그 조치를 철회할 권한이 있는 경우.
2. 수형자가 그 조치를 남용한 경우.
3. 수형자가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의 장은 행형의 완화 및 휴가의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이 없었던 경우에는 장래에 대한 효과로써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석방의 준비】 ① 석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형이 완화되어야 한다(제11조).

② 석방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경우 수형자는 개방시설(제10조)에로 이송될 수 있다.

③ 석방전 3월내에 석방의 준비를 위하여 1주일의 한도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



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한다.

④ 자유작업자(제11조 제1항 제1호)는 석방전 9월내에 월 6일의 한도내에서 석방준비를 위한 특별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한다.

제16조 【석방시기】 ① 수형자는 그의 형기의 종료일의 가능한 한 이른 시각에, 오전중에 석방되어야 한다.

② 그 형기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공휴일, 부활절 또는 오순절 후의 첫 번째 일 또는 12월 22일부터 1월2일까지의 기간에 끝나도록 선고되는 경우 그것이 형기로서 대체할 수 있고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형자를 휴일 또는 그 기간 전의 평일에 석방한다.

③ 수형자가 그의 사회복귀를 위해 조기석방이 필요하다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일의 한도내에서 석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제3절 수형자의 수용과 급식

제17조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중의 수용】 ① 수형자들은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 작업시간중에 작업치료적인 그리고 기타 작업과 아울러 취업교육, 직업상의 평생교육, 재교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자유시간중에 수형자는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 공동집회의 참가를 위하여 시설의 장은 행형시설의 공간적, 인적 그리고 조직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③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중의 혼거수용은 다음의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수형자에 대하여 해로운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2. 수형자가 제6조에 의하여 2월 이내의 조사를 받는 경우.
3. 행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에 필요한 경우.
4. 수형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18조 【휴식시간중의 수용】 ① 휴식시간중의 수형자는 그의 거실에 수용한다. 수형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혼거수용을 허용한다.

② 개방시설에서의 수형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경우 휴식시간중 그의 동의에 의하여 혼거수용할 수 있다. 폐쇄시설에서의 집행에서는 제1항의 경우 이외에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득이한 이유로서만 휴식시간의 혼거수용이 허용된다.

제19조 【수형자 및 그의 개인소유물에 의한 장식】 ① 수형자는 자신의 물건으로 상당한 정도로 그의 거실을 장식할 수 있다. 친밀한 사람들의 사진 및 개인적으로 가치있는 기념물은 그에게 간직하도록 한다.

② 거실의 시찰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행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가리개 및 물건은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 【복장】 ① 수형자는 수의를 착용한다. 자유시간을 위하여 수형자는 특별한 상의를 지급받는다.

② 행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반외출시에 자신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허가한다. 행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세탁, 수선 및 규칙적인 갈아입기를 자기부담으로 행하는 한 이를 또한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행형시설의 급식】 행형시설 급식 내용 및 영양가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특별급식을 제공한다. 수형자에게 그의 종교집단의 식사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22조 【구입】 ① 수형자는 그의 지급금(제47조) 또는 그의 용돈(제46조)으로 행형시설에서 주선한 공급품으로부터 신체건강을 위한 물품과 아울러 식료품 및 기호품을 구입할 수 있다. 행형시설은 수형자의 희망과 필요를 고려하여 공급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행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물건은 이를 구입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식료품 및 기호품의 구입이 진정으로 그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병원 및 의무실에서는 개별적인 식료품 및 기호품의 구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자신의 과실없이 부양가족급부금 또는 용돈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내에서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 제4절 특별한 원인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반외출과 접견, 문서교환

제23조 【원칙】 수형자는 이 법의 범위내에서 행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교통할 권리가 있다. 행형시설 밖에 있는 사람과의 교통은 조장되어야 한다.

제24조 【접견권】 ① 수형자에게 정기적인 접견을 허용한다. 전체 접견시간은 최소한 월 1시간으로 한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행형시설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접견이 수형자 처우 또는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거나, 수형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제3자에 의해 대리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수형자 석방시까지 연기될 수 없는 개인적 법적 또는 업무적인 용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③ 접견자가 안전상의 이유에서 검색을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5조 【접견금지】 행형시설의 장은 다음의 경우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1. 행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2. 그 접견이 수형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때에 형법상 수형자의 친족이 아닌 접견자인 경우.

제26조 【변호인 및 공증인의 접견】 수형자와 관계있는 법률사건에 관계하고 있는 변호인 접견 및 공증인 접견은 허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이에 준용한다. 변호인이 반입한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에 대한 검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접견의 감시】 ① 접견은 행형시설의 처우, 안전 또는 질서의 이유에서 감시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그 대화를 감시한다.

② 접견은 접견자 또는 수형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중단할 수 있다. 중지 요청은 그 접견을 즉시 중단시키는 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한다.

③ 변호인 접견은 감시를 받지 아니한다.

④ 물건은 접견시 허가에 의하여만 수수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시 수수한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변호사 또는 공증인 접견, 수형자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수수한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접견시에는 행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상의 이유로 그 서류의 수수는 허가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 제29조 제1항 2문 및 3문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서신교류권】 ① 수형자는 제한없이 서신을 교류할 권리가 있다.

② 행형시설의 장은 다음의 경우 특정인과의 서신교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행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2. 서신교류가 수형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그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때에 형법상 수형자의 친족이 아닌 자의 경우.

제29조 【서신교류의 검열】 ① 수형자의 변호인과의 서신교류는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 행위가 형법 제129a조에 의한 범죄행위가 자유형 집행의 기초가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제148a조를 이에 준용한다. 그러나 수형자가 개방집행시설에 있거나 제11조 제1항 1문 또는 2문 후단에 의거하여 수형자에게 집행을 완화가 허용되거나,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행형시설의 장에게 집행을 완화 및 휴가의 취소 또는 철회의 권한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 2문은 기결수에

대한 자유형 집행이 근거가 되는 판결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a조에 의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자유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 적용이 있다.

② 연방 및 주의 의회, 그 의회의원에 대한 수형자의 서신은 그 서신이 이러한 의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신된 것이고, 발신인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및 유럽인권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는 것일 경우에는 아무런 검열도 받지 아니한다.

③ 기타 서신교류는 처우 또는 행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 검열을 받는다.

제30조 【서신의 송부 영치】 ① 수형자는 달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행형시설에 의해서 그의 서신교류는 허가받아야 한다.

② 수발하는 서신은 지체없이 송부되어야 한다.

③ 수형자는 달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수령한 서신을 개봉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형자는 그 서신을 봉인하여 그의 소유물로 할 수 있다.

제31조 【서신의 압류】 ① 행형시설의 장은 다음의 경우 서신을 압류할 수 있다.

1. 집행목적 또는 행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2. 그 서신송부가 내용의 인지로 범죄구성요건 또는 벌금형구성요건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3. 그 서신이 행형시설의 제반사정에 관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대단히 왜곡하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4. 그 서신이 명백한 모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5. 그 서신이 다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6. 그 서신이 암호로 읽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게 작성되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② 부당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발송서신은 수형자가 발송을 주장하는 경우 첨서가 동봉될 수 있다.

③ 서신이 압류된 경우 이를 수형자에게 통지한다. 압류된 서신은 발신인에게 반송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이의 실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행형시설에 영치한다.

④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열이 종결된 서신은 압류할 수 없다.

제32조 【장거리 통화 및 전보】 수형자의 장거리 통화나 전보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장거리 통화는 기타 접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보이용은 문서수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소포】 ① 수형자는 연 3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식료품 및 기호품의 소포를 수



령할 수 있다. 행형시설은 발송시기 및 개별 목적물의 최고 한도량을 규정할 수 있다. 기타의 소포 또는 다른 내용물이 있는 소포는 행형시설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외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소포는 수형자의 앞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제외된 물건은 수형자의 영치물에 귀속시키거나 발신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발송 또는 보관시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인도되지 아니한 물건은 폐기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취해진 조치는 수형자에게 통지한다.

③ 소포의 수령은 행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이유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④ 수형자의 소포발송은 허용한다. 행형시설은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이유로 하여 그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제34조 【지득한 사실의 이용】 ① 접견 또는 서신교류의 검열로부터 알게 된 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수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행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예방, 방지 또는 소추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수적인 경우.
2. 이것이 처우의 이유에서 필요한 경우.

② 지득사항은 당해 교도관 및 당해 법원과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를 예방, 방지 또는 소추할 권한이 있는 관청에만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 【휴가, 외출 및 중요한 사유에 의한 동반외출】 ①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의 장은 수형자에게 외출을 허가하거나 7일의 한도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질병을 사유로 하거나 친족의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사유에 의한 휴가는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는 정기휴가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③ 제11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에 의하여 외출 또는 휴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동반외출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처우 또는 사회복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법원의 소환】 ① 행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그 소환을 준수하고, 도주 또는 남용의 위험(제11조 제2항)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소환에 참석하도록 수형자에게 외출 또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는 이에 준용한다.

② 수형자가 법원의 기일에 소환되었고 외출 또는 휴가를 허가 받지 못하는 경우, 행형시설의 장은 도주 또는 남용의 위험(제11조 제2항)을 이유로 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의 동의에 의한 동반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행형시설의 장은 구인영장이 있는 경우 수형자를 구인시킨다.

③ 행형시설은 추후 발생한 사항을 법원에 보고한다.

## 제5절 작업 교육 및 보습교육

제37조 【할당】 ① 작업, 치료요법적인 작업, 교육 및 보습교육은 특히 석방 후에 취업을 위한 능력을 주선, 유지 또는 증진할 목적에 기여하도록 한다.

② 행형시설은 수형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작업을 할당해 주며 이 경우 수형자의 능력, 숙련도 및 소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능력있는 수형자에게는 직업교육, 직업적인 보습교육, 재교육 기타 교육 또는 보습교육 조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④ 근로능력 있는 수형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작업 또는 제3항의 조치에 참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에게 상당한 작업을 할당하여야 한다.

⑤ 수형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작업요법에 전념토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강의】 ① 중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능력있는 수형자를 위하여 중등학교 졸업에 중요한 과목의 강의 또는 특수학교에 준하는 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또는 재교육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가치의 성질상 그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업상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또한 이를 적용한다.

② 강의는 작업시간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9조 【임의적 작업조건, 자발적 작업】 ① 처우계획의 범위내에서 석방 후의 취업을 위한 능력을 주선,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목적에 부합하며 집행의 중대한 이유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작업조건 위에 행형시설 외부에서 작업, 직업교육, 직업상의 보습교육 또는 재교육에 전념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14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에게 자발적으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행형시설은 작업보수를 수형자의 행형시설 계정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졸업증서】 교육 또는 보습교육 조치에 관한 졸업증서에는 참가자의 구금상태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 【작업의무】 ① 수형자는 그의 신체상태를 감안하여 그가 달성해 낼 수 있는 자기에게 할당되고 자기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작업, 작업요법적인 또는 기타의 작업을 수행해



야 할 의무가 있다. 수행자는 연 3월의 한도내에서 행형시설에서 보조작업을 하여야 하며,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기간도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수행자에 대하여는 동항 1문 및 2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취업중인 모의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작업금지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중인 부녀 및 수유중인 부녀에 대하여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 제3항에 의한 조치는 수행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동의는 적절한 시기에 철회할 수 있다.

③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영업(제149조 제4항)에서의 작업은 수행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동의를 철회는 작업장소가 다른 수행자에 의하여 대신할 수 있는 경우 늦어도 6주간 후에는 효력을 발생한다.

제42조 【작업의무의 면제】 ① 수행자가 1년 동안 제37조에 의거하여 할당받은 작업 또는 제41조 제2항에 의한 보조작업을 수행한 경우, 수행자는 18일의 작업일을 작업의무로부터 면제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수행자가 질병의 결과 그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있었던 시간은 연 6주의 한도내에서 당해연도에 산입된다.

② 휴가가 작업시간에 들어있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 또는 친족의 사망을 사유로 하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급중의 휴가(제13조, 제35조)는 면제 기간에 산입된다.

③ 수행자는 면제기간 동안에도 그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보수를 계속하여 받는다.

④ 형집행 이외의 작업조건상의 휴가규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조 【작업보수】 ① 수행자가 제41조 제1항 2문에 의거하여 할당받은 작업, 기타의 작업 또는 보조작업을 이행하는 경우 수행자는 보수를 받는다. 보수의 산정에는 다음해의 피교육자를 제외한 근로자 및 피고용자의 전체 연금보험피보험자의 평균보수에 대한 제200조에 규정된 법률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수행자표준보수). 일당금액은 수행자표준보수의 250분의 1로 한다. 그러나 보수는 시간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보수는 수행자의 작업성과 및 작업의 종류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행자의 작업성과가 최저표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수행자표준보수의 75퍼센트에 미달할 수 있다.

③ 수행자가 할당받은 작업요법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의 작업의 종류 및 작업성과에 상응하는 한 그는 보수를 받는다.

④ 보수는 수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제44조 【직업양성기간중의 특별부양수당】 ① 수행자가 직업교육, 재교육, 직업상의 보습교육 또는 강의에 참가하는 경우 및 수행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의 작업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수행자에게 그러한 사유로 자유인이 받게 되는 생계비를 위한 급부가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업양성기간중의 특별부양수당을 받는다. 연방사회부조법 제2

조 제2항에 의거한 사회부조의 순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직업양성기간중의 특별부양수당의 산정에는 이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수행자가 작업기간중에 강의 또는 제37조 제3항에 의거한 기타 할당받은 조치에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참가하는 경우 수행자는 이에 의해서 그가 상실하게 되는 보수의 정도에 따라 직업양성기간중의 특별부양수당을 받는다.

제45조 【결손보상금】 ① 근로능력 있는 수행자에게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작업 또는 작업이 1주일 이상 할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행자는 결손보상금을 받는다.

② 수행자가 작업 또는 작업의 개시 후 그의 귀책사유 없이 질병의 결과 1주일 이상 그의 작업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수행자는 역시 결손보상금을 받는다. 제44조에 의한 직업양성 기간중의 특별부양수당 또는 전조 제1항에 의한 결손보상금을 받은 수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제37조의 작업 또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임신중인 부녀는 분만 전 최종 6주간 및 분만 후 8주간의 경과시까지 초산 및 다태아 출산시에는 12주간까지 결손보상금을 받는다.

④ 결손보상금은 수행자가 실직 또는 질병 전에 제43조 제2항의 최저보수에 미달한 경우에만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수행자표준노임의 60퍼센트에 미달할 수 있다.

⑤ 결손보상금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산하여 최고 연 6주까지 허용한다. 기타 결손보상금은 수행자가 새로 최소한 1년동안 보수 또는 직업양성기간중의 특별부양수당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⑥ 수행자가 라이히보법 제56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결손보상금에 대한 청구가 중단된다.

제46조 【용돈】 수행자가 연령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수행자에게 결손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이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행자는 그의 필요에 상당한 정도의 용돈을 받는다. 제37조 제5항에 의한 작업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는 수행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7조 【수행자의 부양가족급부금】 ① 수행자는 이 법에 규정된 급료로부터 최소 월 30마르크(수행자부양가족급부금) 및 구입(제22조 제1항) 또는 기타의 용도를 위한 용돈(제46조)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행자부양가족급부금의 최저액은 300마르크를 초과하는 월급료에 대하여 그 때마다 100분의 10을 인상한다. 행형시설은 갱생보조금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③ 임의적 작업조건에 있거나(제39조 제1항) 또는 자발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제39조 제2항) 허용받은 수형자에게 그의 보수에 상당한 정도의 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이 정해진다.

제48조 【법규명령】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노동사회부장관과 협의 및 연방참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제43조 내지 제45조의 시행을 위한 보수등급에 관한 법규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

제49조 【부조금】 ① 수형자의 신청으로 법적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그의 급료에서 피부양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소득이 구금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 및 생활부조금의 공제 후에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부조금은 민사소송법 제850c조에 의거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한도에서만 지급된다. 전조 1문에 의거한 표준적인 금액산정의 경우에 피부양권리가 있는 자의 수는 1인이 감소한다.

제50조 【구금비용】 ① 이 법에 규정된 급료 및 임의적 작업조건에 있는(제39조 제1항) 수형자의 보수에서 라이히보험법 제160조 제2항에 의거한 현물급여의 평가를 평균한 금액의 한도에서 구금비용이 유보할 수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전년도 10월 1일에 적용하고 있는 현물급여 평가기준에 의한 매년도 평균노임을 확정하여 이를 연방관보에 공고한다. 구금비용은 또한 압류할 수 없는 보수의 일부에서 그러나 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 또는 생활부조금의 부담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형자가 구금비용을 매월 사전에 지급한 것과는 별도로 자발적 작업(제39조 제2항)이 행해질 수 있다.

제51조 【갱생보조금】 ① 이 법에 규정된 보수 및 임의적 근로조건에 있거나(제39조 제1항) 또는 자발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제39조 제2항) 허가받은 수형자의 보수에서 수형자의 석방 후 처음 4주간 동안 수형자 및 그의 피부양자의 기본적인 생활부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갱생보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조금은 석방시에 수형자에게 지급한다. 행형시설은 그 갱생보조금이 석방후 처음 4주간 이내에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보호관찰자 또는 보석과 관련있는 직책에 있는 자에게 그 갱생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보호관찰자 및 보석과 관련있는 직책에 있는 자는 갱생보조금을 그의 재산에서 구분해 유지할 의무가 있다. 수형자의 동의에 의하여 갱생보조금은 또한 피부양권리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③ 행형시설의 장은 그 갱생보조금이 수형자의 사회복지에 도움이 되는 지출을 위하여 청구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갱생보조금의 지급청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갱생보조금이 제1항에 규정된 정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한도로 사적인 자금에 대한 지급 청구도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1문 및 2문에 의거하여 압류할 수 없는 청구를 이유로 금전을 지급받은 석방된 수형자의 현금은 그것이 4주간의 경과시까지 압류시기를 위한 청구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석방 이후 4주간의 기간동안 압류되지 아니한다.

⑤ 전항 제4항은 민사소송법 제850d조 제1항 1호에 열거된 부양청구를 이유로 하는 압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석방된 수형자에게는 그의 석방 후 4주간의 경과시까지 압류시기를 위하여 그의 필수적인 생계 및 기타 그의 법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만큼은 남겨두어야 한다.

제52조 【개인자금】 사적인 자금,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 구금비용, 생활부조금 또는 갱생보조금으로서 청구되지 아니하는 수형자의 보수는 수형자의 개인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 제6절 종교행사

제53조 【사제직】 ① 수형자에게 종교단체의 사제를 통한 종교적인 보호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형자의 희망에 의하여 그의 종교단체의 사제와 교통할 수 있도록 수형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② 수형자는 기본적인 종교서적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종교서적은 중대한 남용의 경우에만 수형자에게서 박탈할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는 상당한 정도로 종교적 용도의 물건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54조 【종교행사】 ① 수형자는 예배 및 그의 종파의 기타의 종교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종교단체의 사제가 동의하는 경우, 예배 또는 다른 종교단체의 행사에 대하여 수형자는 이의 참가가 허용된다.

③ 수형자는 안전 또는 질서상의 중대한 이유에서 금지된 경우 예배 또는 기타의 종교행사에 대한 참가가 배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사제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5조 【세계관적 신념을 같이 하는 공동체】 세계관적인 종파의 소속원에게 제53조 및 제54조가 준용된다.

## 제7절 위생보호

제56조 【총칙】 ①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01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는 위생보호 및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 수형자는 건강의 보전을 위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30세가 된 여자의 경우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연 1회의 검진.
2. 45세가 된 남자의 경우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연 1회의 검진.
3. 여자의 경우 자기와 함께 수용되어 있는 자녀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정상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성장에 특히 장애가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제58조 【질병시의 보호】 수형자는 질병 초기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의사 및 치과 의사의 치료.
2. 약품, 붕대, 치료제 및 안경 등의 공급.
3. 신체부착물, 정형외과 및 기타의 보조물.
4. 의치 및 치관을 위한 비용의 보조금지급 또는 총비용의 인수.
5. 집행의 범위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전성질병검사 및 작업은행

제59조 【보호의 종류 및 범위】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의 종류 및 질병의 조기발견과 질병시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라이히보험법의 당해 규정과 이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규칙을 적용한다.

제60조 【휴가중 질병의 보호】 휴가 또는 외출중에는 수형자는 행형당국에 대하여 관할 행형 시설에서 의사의 치료 및 보호청구권만을 갖는다.

제61조 【보조물의 공급】 수형자는 자유박탈형의 단축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경우 절박한 장애의 예방치료의 성공보장 또는 신체적 장애제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신체부착물, 정형외과적 및 기타의 보조물의 장비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그 청구권은 집행의 범위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필수적인 개조, 수선 및 하자보수와 그러한 보조물의 사용에 대한 교육의 경우도 포함한다.

제62조 【의치 및 치관을 위한 보조금】 주법무부는 일반행정규정에 의하여 의치 및 치관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정한다. 주법무부는 전체비용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63조 【사회복귀를 위한 의사의 치료】 수형자의 동의에 의하여 행형시설은 사회복귀를 증진시키는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 또는 인공보조장구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이것이 그의 경제상태에서 볼 때 인정될 수 있고 그 치료의 목적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4조 【시설외 체류】 수형자가 시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 일기가 적절한 경우 수형자에게 매일 1시간 이상을 시설외에 체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 【이송】 ① 질병이 있는 수형자는 행형시설 의무실 또는 의료보호를 위해 더 좋은 시설이 있는 행형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질병이 행형시설 또는 행형시설 의무실에서 발견 또는 치료될 수 없거나 그 수형자를 적시에 행형시설 의무실로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수형자는 행형시설 외부의 병원으로 보내져야 한다. 수형자가 병원에 체류하는 동안 형집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법적 의료보험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필요한 급부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제66조 【질병 또는 사망의 통지】 ① 수형자가 중병인 경우 가족, 신입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타의 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가능한 한 수형자의 희망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절 자유시간

제67조 【총칙】 수형자는 그의 자유시간을 향유할 기회를 갖는다. 수형자는 스포츠를 포함하는 강의, 통신강의 교과과정 및 기타 계속교육의 개최, 자유시간을 위한 모임, 집단 대화와 운동경기 등에 참가하고 장서를 이용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68조 【신문 및 잡지】 ① 수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행형시설의 주선으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② 형벌 및 벌금으로 배포를 억제하는 신문 및 잡지는 제외된다. 신문 또는 잡지의 하나 또는 그 일부가 형집행의 목적 또는 행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로부터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

제69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① 수형자는 행형시설의 라디오프로그램 및 공동의 텔레비전 시청에 참여할 수 있다. 방송은 국민의 정보, 교양 및 오락에 대한 희망이나 필요성을 알맞게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한다. 라디오 수신 및 텔레비전 시청은 이것이 안전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되거나 각각의 수형자에게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사유의 라디오 수신장치는 제70조의 조건하에 사유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 예외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70조 【자유시간 향유를 위한 물건의 소유】 ① 수형자는 상당한 범위내에서 보습교육 또는 자유시간 향유를 위한 도서 및 기타의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② 그 물건의 소유, 양도 또는 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형벌 또는 벌금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집행의 목적, 행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 ③ 그 허가는 제2항의 조건하에 철회될 수 있다.



## 제9절 사회원조

제71조 【원칙】 수형자는 그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형시설에 사회적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원조는 수형자의 입지를 개선하고, 그의 당면문제를 스스로 정리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2조 【수용시의 원조】 ① 수용시에는 수형자는 원조를 요하는 가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 외부의 그의 재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② 수형자는 사회보험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3조 【행형중의 원조】 수형자는 그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특히 그의 선거권의 행사, 피부양자의 보호 및 범죄행위로 야기된 손해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원조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석방을 위한 원조】 석방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형자는 그의 개인적, 경제적 및 사회적 당면문제의 정리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 자문은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을 가지는 직책에까지 미친다. 수형자는 석방 후를 위하여 직장, 숙소 및 개인적인 후원자를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75조 【석방보조금】 ① 수형자는 그 자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한 행형시설로부터 귀가여비를 위한 보조금과 아울러 갱생보조금 및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의복을 받는다.

② 갱생보조금의 산정시에는 자유박탈의 기간, 수형자의 개인적 작업배치 및 형기동안 사적인 자금 및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에 대한 그의 처분의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1조 제2항 2문 및 3문은 이에 준용된다. 갱생보조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양권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귀가여비를 위한 보조금청구권 및 지급된 귀주보조금을 압류할 수 없다. 수형자에 대한 갱생보조금의 지급 후에 갱생보조금청구권 및 금액에 대하여는 제 51조 제4항 1문 및 3문, 제5항을 준용한다.

## 제10절 여성수형자 특별규정

제76조 【모권보호】 ① 출산한 임신부 또는 여자수형자에 대하여는 그녀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상황에서의 근로능력 있는 부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이에 준용한다.

② 여자수형자는 임신중 및 출산후에 행형시설에서 의사의 보호조치 및 조산원의 조력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임신중의 보호조치에는 특히 임신확인검진 및 직업상의 의료

검진을 포함한 출산준비검진이 이에 속한다.

③ 출산을 위하여 임신부는 행형시설 외부병원으로 옮겨져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산은 산부인과가 있는 행형시설에서 행해져야 한다. 출산시에는 조산원의 조력 및 필요한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는다.

제77조 【약품 봉대 및 치료제】 임신중의 고통 및 출산과 관련하여 약품 봉대 및 치료제를 공급한다.

제78조 【모권보호의 종류 및 범위】 제59조, 제60조 및 제65조는 모권보호의 이행에 준용한다.

제79조 【출생신고】 호적공무원에 대한 출생신고에 있어서 그 행형시설을 그 자녀의 출생장소로, 신고인과 행형시설과의 관계 및 모의 수형상태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80조 【자녀가 있는 부녀】 ① 여자수형자의 자녀가 아직 의무교육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자녀의 이익에 적합한 때는 체류결정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그의 모가 있는 행형시설에 수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 수용전에 소년보호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그 수용은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비용으로 한다. 이에 의해서 모와 자녀의 혼거수용이 어려워질 경우 행형시설의 비용보상청구권 주장은 배제될 수 있다.

## 제11절 안전과 질서

제81조 【원칙】 ① 행형시설에서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수형자의 책임의식을 고양 증진하여야 한다.

② 행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형자에 부과되는 의무 및 제한은 그것이 그 목적에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필요한 것 이상이어서는 아니되며 장기적으로 수형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어야 한다.

제82조 【행동규칙】 ① 수형자는 행형시설의 일과시간표(근로시간, 자유시간, 휴식시간)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그의 행동에 의해서 교도관, 동료수형자 및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② 수형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교도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형자는 허가없이 그에게 지시된 범위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③ 수형자는 그의 거실 및 행형시설에서 그에게 부여한 물건을 정돈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④ 수형자는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현저히 위협을 나타내는 상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 【사적인 보관, 사적인 자금】 ① 수형자는 행형시설가 자기에게 수여하였거나 행형시



설의 동의에 의하여 수여받은 물건만을 보관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수형자는 동의없이 다른 수형자로부터 가격이 얼마 안되는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행형시설은 그의 동의에 의하여 이 물건의 수령 및 보관을 할 수 있다.

② 수형자가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반입된 물건은 이것이 방법 및 범위상 가능한 수형자를 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금전은 개인자금으로서 수형자의 계정에 기입된다. 수형자에게는 이것이 갱생보조금으로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 한 수형자가 집행 중에 그리고 그의 석방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발송하거나 그의 사적인 자금을 처분할 기회가 주어진다.

③ 수형자가 그 방법 및 범위상 그것의 보관이 불가능하게 반입된 물건을 행형시설로부터 반송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행형시설은 이 목적물을 수형자의 비용으로 행형시설로부터 제거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

④ 행형시설의 안전예방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는 문서 및 그 물건은 행형시설가 이를 폐기하거나 무용화시킬 수 있다.

제84조 【검색】 ① 수형자의 물건 및 거실을 검색할 수 있다. 남자수형자의 검색에 있어서는 남자직원이 여자수형자의 경우에는 여자직원이 이에 참석한다. 수치감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그것을 지체하면 위험이 있을 경우나 각각의 사항에 대한 시설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탈의한 채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검사는 폐쇄된 거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다른 수형자는 참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입소시 및 수형자가 행형시설로부터 부재였던 후에 검진받도록 할 것을 일반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85조 【안전수용】 수형자는 도주위험이 현저하거나 기타 그의 행동 또는 그의 상태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에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안전수용에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86조 【범인감식사무조치】 ① 집행의 안전을 위하여 범인감식사무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1. 지문 및 수문의 채취.
2. 사진촬영.
3. 외모 특징의 확인.
4. 체위측정.

② 그 획득된 범죄감식사무에 의한 증거는 수형자신분태장에 첨부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수사경찰서의 서류 속에 보관될 수 있다.

③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범죄감식사무의 대상으로 취급받은 자는 집행으로부터 석방된 후에 그 집행에 기초가 되었던 법관의 판결의 집행이 종결된 즉시 그 획득된 범인감식사무에 의한 증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형자는 늦어도 석방시에는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제87조 【체포권】 도주했거나 허가없이 행형시설 밖에 체류하고 있는 수형자는 행형시설에 의하여 또는 행형시설의 지시로 체포되어 행형시설로 다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 【특별안전조치】 ① 수형자가 그의 행동에 의하여 그의 정신상태를 기초로 하여 도주위험이 현저하거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폭행의 위험,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안전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② 특별안전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1. 목적물의 박탈 또는 유치.
2. 야간관찰.
3. 다른 수형자와의 격리.
4. 구외운동의 제한 및 금지.
5. 위험물이 없는 특별안전장치된 구금실에서의 수용.
6. 포박조치.

③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조치는 자유시간의 위험 또는 시설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달리 회피될 수 없거나 제거될 수 없을 경우에도 또한 허용된다.

④ 동반외출, 구인 또는 이송시에 제1항의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고도의 도주위험이 있는 때에도 또한 포박조치가 허용된다.

⑤ 특별안전조치는 그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제89조 【독거수용】 ① 계속적인 수형자의 독거수용은 수형자 개인에 있는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1년에 총합 3개월 이상의 독거수용은 감독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기간은 수형자가 예배 또는 자유시간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90조 【포박조치】 원칙적으로 포박은 손 또는 발에만 행해진다. 수형자를 위하여 행형시설장은 다른 포박조치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포박조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한다.

제91조 【특별안전조치의 지시】 ① 특별안전조치는 행형시설장이 지시한다. 위험시에는 지체없이 행형시설의 기타 교도관들도 이러한 조치를 임시로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형시설장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② 수형자가 의사의 치료 또는 검진을 받거나 그의 정신상태가 그러한 조치의 원인이 되



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체하면 위협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견을 지체없이 얻도록 한다.

제92조 【의사의 순시】 ① 수행자가 특별한 안전장치가 된 거실에 수용되어 있거나 포박조치 되어 있는 경우에만(제88조 제2항 5호 및 6호)행형시설 의사는 즉시 그리고 계속해서 가능한 한 매일 그 수행자를 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반외출, 구인 또는 호송 중의 포박조치(제88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수행자가 일상의 개방수용이 박탈되어 있는 한 의사는 규칙적으로 이를 통지받아야 한다.

제93조 【비용의 배상】 ① 수행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해 또는 다른 수행자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행형시설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타 법규정으로부터의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러한 청구의 주장시에는 수행자가족부양급부금(제47조)의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또한 청구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열거된 청구에 대하여 정상적 소송수단이 주어져 있다.

④ 이에 의하여 수행자의 처우 또는 그의 사회복귀가 지장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청구를 사유로 하는 배상 또는 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 제12절 직접강제

제94조 【일반요건】 ① 행형시설의 교도관은 집행 및 안전조치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직접강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행자 이외의 자가 수행자의 석방을 위하여 또는 불법적으로 시설내에 침입하려고 기도하거나 권한없이 시설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직접강제가 사용될 수 있다.

③ 다른 규정상의 직접강제를 위한 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5조 【개념정의】 ① 직접강제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신체적인 힘, 그 보조수단 또는 무기에 의하여 작용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신체적인 힘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모든 직접의 신체적 작용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③ 신체적인 힘의 보조수단이라 함은 특히 수갑을 말한다.

④ 무기라 함은 직무상 허용된 도검류, 총포류 및 자극물질을 말한다.

제96조 【비례의 원칙】 ① 직접강제의 여러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중에서 그 개별성과 일반성

에 비추어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는 그에 의해 예견되는 침해가 그 행사로 인한 효과와의 비례를 일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지된다.

제97조 【지시에 의한 행위】 ① 직접강제가 상관 또는 기타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지시된 경우 교도관은 그 지시가 사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의 목적으로 발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② 그 지시는 그것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이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이에 복종하는 경우 그것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그가 상당히 알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에게 책임이 있다.

③ 그 지시의 합법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교도관은 그 지시자에 대하여 사정상 가능한 이를 개진하여야 한다. 상관에 대한 그러한 의심의 고지에 관하여 일반공무원법의 상이한 규정(공무원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8조 【예고】 직접강제는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예고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위반 행위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상황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즉시 직접강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 【총포류 사용에 대한 일반규정】 ① 총포류는 직접강제의 다른 조치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총포의 사용은 물건에 대한 무기의 효력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총포류는 이의 사용이 특정된 교도관만이 공격 또는 도주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총포류의 사용은 제3자가 이의 사용으로 위험에 처할 것이 인식되는 더 큰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된다.

③ 총포류의 사용은 사전에 예고되어야 한다. 경고발사 또한 예고로서 유효하다. 총포류는 신체나 생명의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예고없이 사용될 수 있다.

제100조 【총포류 사용에 대한 특별규정】 ① 수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총포류가 사용될 수 있다.

1. 반복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도구를 버리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행자가 폭동(형법 제121조)을 기도하는 경우.
3. 수행자의 도주를 좌절시키거나 수행자를 다시 생포하기 위한 경우. 단 개방시설로부터의 도주를 좌절시키기 위하여는 여하한 총포류도 사용될 수 없다.

② 기타의 자가 수행자를 폭력으로 석방시키려고 기도하거나 폭력으로 행형시설에 침입하려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타의 자에 대하여 총포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1조 【건강보호분야에 대한 강제조치】 ① 의료적인 검진, 치료 및 영양공급은 생명의 위험 시, 수형자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시 또는 기타의 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시에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사자를 위하여 타당하고 수형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한 그러한 조치의 실행에 대하여 행형시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의 강제적 신체검사는 신체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강보호 및 위생을 위하여 허용된다.
- ③ 그 조치는 의사가 적시에 도착할 수 없으며 그것을 연기함으로써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의 응급조치와는 별도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사의 지휘하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

### 제13절 징벌조치

제102조 【요건】 ① 수형자가 이 법에 의하여 또는 이 법상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고의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그에 대하여 징벌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② 수형자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징벌조치가 배제된다.
- ③ 징벌조치는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하여 형사절차 또는 범칙금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제103조 【징벌조치의 종류】 ① 허용되는 징벌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수형자부양가족급부금 처분권 및 3개월이내의 구입권의 제한 또는 박탈.
  3. 2주 이내의 독서물의 제한 또는 박탈 및 3개월 이내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청의 제한 또는 박탈.
  4. 3개월 이내의 자유시간의 향유를 위한 물건 또는 공동행사에 대한 참가의 제한 또는 박탈.
  5. 4주 이내의 자유시간 동안의 격리 수용.
  6. 1주 이내의 주간의 야외체류의 박탈.
  7. 이법에 규정된 급료의 중단하에 4주 이내의 할당된 작업 또는 작업의 박탈.
  8. 긴급한 경우 행형시설 외부인과의 3개월 이내의 교통권의 제한.
  9. 4주 이내의 구류.
- ② 구류는 더 중한 위반 또는 수회 반복된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결정될 수 있다.

③ 다수의 징벌조치는 서로 병합될 수 있다.

④ 제1항 3호 내지 8호에 의한 조치는 가능한 한 그 위반이 제한될 수 있거나 박탈될 수 있는 권한과 관계있는 경우에만 지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류와 관계되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없다.

제104조 【징벌조치의 집행, 보호관찰을 위한 중단】 ① 징벌조치는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된다.

- ② 징벌조치는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 ③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경우 이 기간에 생긴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은 갱생보조금에 가산되어야 한다.
- ④ 행형시설 외부인과 수형자간에 교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수형자와 서신교류를 하고 있거나 수형자를 면회하던 자에게 이를 통지할 기회가 수형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수신인, 연방공화국의 법원, 법무부 및 수형자가 관계되어 있는 법률사건의 변호사 및 공증인과의 서신교류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 ⑤ 구류는 독거구금으로 집행된다. 수형자는 주간 및 야간의 체류를 위하여 규정된 구금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구류실에 수용될 수 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7조, 제38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형자의 권한은 정지한다.

제105조 【징벌권한】 ① 징벌조치는 시설의 장이 지시한다. 이송의 목적으로 다른 행형시설로 이송도중에서의 위반에 대해서는 목적지 시설의 장이 관할한다.

- ② 수형자의 위반행위가 행형시설장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감독관이 이를 결정한다.
- ③ 다른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또는 미결구금 중이 수형자에 대하여 지시된 징벌조치는 의뢰에 의하여 집행된다. 제104조 제2항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조 【절차】 ① 사실관계는 소명되어야 한다. 수형자는 진술한다. 소의 제기는 조서에서 확정된다. 수형자의 응소는 기재된다.

- ② 중대한 위반시에는 시설의 장은 회의에서의 결정에 앞서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협력하는 자들과 상의하여야 한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수형자 또는 임신부나 수유 중인 부녀에 대한 징벌조치의 지시에 앞서 시설내의 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그 결정은 시설의 장이 수형자에게 먼저 구두로 통지하고 간단한 이유있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107조 【의사의 협력】 ① 구류가 집행되기 전에 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류 중에는 수형자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다.
- ② 수형자의 건강이 위태로운 구류의 집행을 중지 또는 중단한다.



제14절 법률구제수단

제108조 【소원권】 ① 수행자는 그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서 그의 소망사항, 제안사항 및 이의사항을 가지고 시설의 장에게 소원할 기회를 갖는다. 정기적인 면담시간은 배정되어야 한다.

② 감독관청에서 행형시설을 순시하는 경우에는 수행자가 그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그 감독관청의 순회공무원에게 소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③ 직무감독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9조 【사법적 재판의 신청】 ① 형사집행상의 개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사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과 함께 각하 또는 중단된 조치의 발동의무도 또한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법적 재판에 대한 신청은 신청인이 그 조치 또는 조치의 각하 내지 중단에 의하여 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주법률은 사전의 행정전치절차 후에야 비로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10조 【관할】 행형시설의 관할에 행형부가 그 신청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109조 제3항에 의거한 행정전치절차에서의 결정에 의하여 행형부의 관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11조 【당사자】 ① 사법절차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제기인.

2. 취소조치를 지시하거나 신청을 각하 내지 중단한 행형시설.

② 고등법원 또는 연방법원에서의 절차에 있어서 제1항 2호에 의거한 당사자는 당해 감독관청이다.

제112조 【신청기간, 원상회복】 ① 신청은 그 조치의 송달, 서면공고 또는 그 조치의 각하 후 2주간내에 서면 또는 법원서기과의 조서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행정전치절차(제109조 제3항)가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 송달 또는 이의결정의 서면공고와 더불어 기간이 개시된다.

② 신청제기인이 고의 과실없이 기한의 준수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에게 원상회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원상회복 신청은 방해의 중지 후 2주간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신청이유에 대한 요건은 신청제기시 또는 그 신청에 관한 절차 중에 확정되어야 한다. 신청기내에는 흠결된 법률행위가 보충되어야 한다. 보충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또한 신청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

④ 지체기간의 종결로부터 1년의 경과 후에는 원상회복신청은 그 신청이 1년기간의 경과전에 더 큰 강제력의 결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조치의 착수신청】 ① 신청제기인이 조치의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판결신청은 법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 소환을 하지 아니하는 한 조치의 착수신청 이후 3개월의 경과전에는 제기되어 질 수 있다.

② 그 신청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의 경과시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그 신청된 조치가 정해진 기간내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소송이 중지된다.

③ 제1항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제기가 1년기간의 경과전에 더 큰 강제력의 결과 불가능하거나 개별적인 경우 특별한 조건하에서 중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치의 착수신청 제기 후 1년의 경과시까지만 허용된다.

제114조 【처분의 중지】 ① 사법적 재판 신청은 연기의 효력이 없다.

② 법원은 신청제기인의 권리실현이 좌절되거나 중대하게 방해받고 있으며 즉각적인 집행에 대하여 더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취소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잠정적인 지시를 발할 수 있다. 행정법원법 제123조 제1항은 이에 준용한다. 판결은 취소될 수 없다. 단, 판결은 법원에 의하여 항상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재판신청은 사법적 재판 신청제기 전에 허용된다.

제115조 【사법적 재판】 ① 법원은 구두변론없이 결정으로써 판결한다.

② 그 조치가 위법하고 신청제기인이 이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조치를 무효로 하며 행정전치절차가 선행되어진 경우 이의 결정을 폐기한다. 그 조치가 이미 집행된 경우 법원은 그 사안의 심리종결후 행형시설가 그 집행을 철회할 것과 그 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③ 그 조치가 사전에 철회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제기인이 이에 대한 정당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신청에 의하여 선언할 수 있다.

④ 그 조치의 각하 또는 중지가 위법하고 신청제기인이 이로 인하여 그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사안의 종결 후 신청받은 직무행위의 착수의무를 해당시설에 선언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법원의 법률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청제기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선언한다.

⑤ 행형시설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조치, 조치의 각하 또는 중지가 재량의 법적 한계를 일탈했거나 또는 재량에 의하여 권한의 목적에 상



응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법한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제116조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 ① 법원 행정부의 사법적 재판에 대하여 권리의 보충 또는 일관성 있는 판결의 보장을 위한 재검사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가 허용된다.

②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항고는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만을 그 근거로 할 수 있다. 법률은 법규가 적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위반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연기의 효력이 없다. 제114조 제2항은 이에 준용된다.

④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를 위하여는 항고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의 관할】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법원의 행정부가 그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법원의 형사부가 판결한다.

제118조 【형식, 기간, 이유】 ①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그 판결을 취소한 법원에 대하여 사법판결의 송달 후 1월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 기간중에 그 판결의 취소 및 폐기가 신청되는 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이유있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그 이유로부터 판결이 절차에 관한 법규위반 또는 기타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흠결이 있는 법률요건이 적시되어야 한다.

③ 항고인인 신청제기인은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 또는 법원서기과의 조서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119조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에 관한 판결】 ① 행정부는 구두변론 없이 결정으로써 판결한다.

② 행정부의 심사에는 항고신청서만이 그 기초가 되며 그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한에 있어서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이유서에 적시되어 있는 법률요건만이 그 기초가 된다.

③ 항고의 각하결정은 형사부가 그 항고를 만장일치로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든가 또는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법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보는 한 취소된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 행정부는 그 사안이 심리종결된 경우 행정부를 대신하여 판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그 사안이 새로이 판결되도록 행정부로 환송되어야 한다.

⑤ 행정부의 판결은 중국판결이 된다.

제120조 【기타 규정의 준용】 ① 이 법에 달리 규정없는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률구조권의 승인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 【소송비용】 ① 결심공판에서 누가 소송비용 및 필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제기인이 패소하거나 자기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청제기인이 소송비용 및 필요경비를 부담한다. 그 조치가 신청의 철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1항의 결정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비용 및 필요경비를 합리적인 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 2문은 제11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그밖에는 형사소송법 제464조 내지 제473조가 준용된다.

⑤ 제109조에 의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또한 수행자가족부양금부금(제47조) 가운데 30마르크를 상회하는 부분에서 청구될 수 있다.

#### 제15절 형집행 및 미결구금

제122조 ① 미결구금이 형집행의 목적을 위하여 중단되거나 형사구금자에 대하여 다른 사안으로 미결구금이 지시되는 경우에는 수행자는 제4조 제2항과는 달리 미결구금의 목적에 필요한 수행자의 자유제한에 부족한다. 필요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126조에 의거한 권한있는 법관이 지시한다.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6항 2호 및 3호는 이에 준용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제148a조는 이에 준용되어야 한다.

#### 제16절 사회치료시설

제123조 【사회치료시설 및 부서】 ① 제9조에 의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시설과는 별도로 사회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 행정시설내에 사회치료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부서에 대하여는 사회치료시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124조 【석방준비를 위한 휴가】 ① 사회치료시설의 장은 수행자에게 석방준비를 위하여 6개월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5항은 이에 준용된다.

② 휴가자에 대하여는 휴가명령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휴가자는 특히 사회치료시설이 지정한 보호자의 감독하에 있을 것과 일시 사회치료시설에 귀소할 것을 지시받을 수 있다.

③ 제14조 제2항은 이에 준용된다. 휴가는 이것이 수행자의 처우상 불가피한 경우 철회된다.

제125조 【임의적·자발적 원칙에 의한 수용】 ① 원래의 수행자는 그의 신청으로 그의 처우목



적에 장애가 되고 그 시설에서의 체류가 이러한 사유로 시인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다시 사회치료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이 수용은 언제나 철회될 수 있다.

② 수용자에 대하여는 집행조치가 직접강제에 의하여 실행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자는 지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제126조 【후속의 보호】 사회치료시설을 위한 전문가의 수는 수형자가 다른 방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한 수형자의 후속하는 보호가 보장되는 정도로 할당되어야 한다.

제127조 【삭제】

제128조 【삭제】

### 제3장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

#### 제1절 보안감호

제129조 【수용목적】 보안감호자는 일반인의 보호를 위하여 확실하게 수용한다. 그 수용은 보안감호자가 자유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0조 【기타 규정의 준용】 보안감호에 대하여 이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제3조 내지 제126조)을 준용한다.

제131조 【설비】 보안감호시설 특히 구금실의 설비 및 개선과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는 수용자가 그의 시설에서의 생활이 중요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오랜 자유박탈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감호자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고려되어야 한다.

제132조 【복장】 수용자는 안전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용자가 자기부담으로 세탁·수선 및 정기적인 갈아입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복장, 세면도구 및 침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3조 【자발적 작업, 용돈】 ① 수용자가 석방 후에 취업을 위한 능력을 주선, 유지 또는 증진할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받고 자발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② 용돈(제46조)은 월30마르크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4조 【석방준비】 석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을 완화하여 1개월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사회치료시설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124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5조 【여자 행형시설에의 보안감호】 여성보안감호자는 시설이 보안감호를 위해 설치된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된 여자행형시설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2절 정신병원 및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제136조 【정신병원수용】 정신병원 수용자의 처우는 의사의 견해에 따르도록 한다. 가능한 한 그가 더 이상 위험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까지 치료를 받고 그의 상태가 호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감독, 보호 및 간호를 하여야 한다.

제137조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금단치료시설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목적은 그의 상습성을 치료하고 잘못된 태도를 제거함에 있다.

제138조 【기타 규정의 적용】 ① 정신병원 또는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은 연방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법에 따른다.

② 수용에는 제51조 제4항 및 제5항, 제75조 제3항 및 제109조 내지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4장 교정관청

##### 제1절 행형시설의 종류

제139조 【행형시설】 자유형 및 보안감호를 위한 수용은 주 행형시설에서 집행한다.

제140조 【분리수용】 ① 보안감호는 분리된 행형시설 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특정하게 분계된 시설에 수용한다.

② 여자는 남자와 분리하여 여자 행형시설에 수용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자 행형시설내에 여자를 위하여 분리된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수형자에게 다른 행형시설 또는 다른 부서에서의 처우조치에 대한 참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분리수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1조 【분계수용】 ①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는 수형자의 상이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처우가 보장되는 별개의 행형시설 또는 부서에 구금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폐쇄집행을 위한 행형시설은 안전한 수용을 대비하고 개방행형시설은 도주방지책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의 대응책만을 규정한다.

제142조 【자녀가 있는 부녀를 위한 시설】 여자 행형시설에는 자녀가 있는 부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3조 【행형시설의 규모와 형태】 ① 행형시설은 개개인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행형시설은 수형자가 개선가능 보호집단 및 처우집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



③ 사회치료시설 및 여자를 위해 마련된 수용시설은 200석 규모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144조 【실내의 크기와 형태】 ① 휴가시간 및 자유시간을 위한 거실 및 단체생활실과 접견실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각각의 목적에 상응한 정도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실내는 충분한 통풍이 되어야 하며 건강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난방시설, 통풍시설, 밀바닥 면적 및 창문면적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에 의하여 통풍에 관한 세부시행령을 통하여 통풍시설, 밀바닥 면적, 창문면적 및 실내의 난방시설과 설치물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45조 【수용능력의 확정】 감독관청은 휴식시간(제18조)동안 적정한 수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행형시설의 수용능력을 확정한다. 이 경우 작업, 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충분한 수의 장소와 아울러 기도, 자유시간, 운동, 치료조치 및 접견을 위한 시설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6조 【과밀수용의 금지】 ① 거실에는 허용된 숫자 이상의 인원이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이에 대한 예외는 단지 일시적으로 감독관청의 동의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제147조 【석방을 위한 시설】 석방준비를 위하여 폐쇄집행을 위한 시설에서 개방시설에 편입하거나 특별개방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8조 【근로의 진흥, 직업교육을 위한 기회】 ① 행형시설은 근로 및 경제단체 및 부서의 협력하에 모든 근로능력 있는 수형자가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수형자가 직업상의 지원, 자문 및 알선받을 수 있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② 행형시설은 적절한 조직상의 조치에 의하여 연방노동부가 직업상담, 근로상담 및 근로알선과 같은 그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49조 【작업의 운영,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① 행형시설은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할당된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영업장 및 직업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설(제37조 제3항)과 작업요법적인 작업(제37조 제5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영업장 및 기타의 시설은 행형시설 외부의 조건과 똑같이 한다. 근로보호규정 및 산재방지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③ 직업교육 및 작업요법적인 작업은 또한 사기업의 적절한 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다.

④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영업장 및 기타 시설에서의 기술지도 및 전문지도는 그 기업의 종업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0조 【행형시설연합회】 각 주는 제139조 내지 제149조에 의거하여 행형시설을 위하여

행형시설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2절 행형시설의 감독

제151조 【감독관청】 ① 주법무부는 행형시설에 관하여 감독한다. 주교정국에 감독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근로사항에 대한 감독 및 수형자의 사회적 곤경지원, 재교육, 위생보호와 기타 전문적인 처우에 대한 감독은 각각의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152조 【집행계획서】 ① 주법무부는 집행계획서에 행형시설의 장소적, 물적 관할을 규정한다.

② 집행계획서는 행형시설 또는 그 부서에 어느 수형자를 수용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기타의 집행을 위한 이송에 관해서는 처우 및 수용의 사유에 따라 결정한다.

③ 기타 관할권에 대하여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3조 【이송을 위한 관할】 주법무부는 이송을 위한 결정을 유보하거나 이를 중앙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제3절 행형시설의 내적 구성

제154조 【공동작업】 ① 모든 수형자는 공동의 작업을 하며 집행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

② 석방부조를 위한 관청 및 부서, 보호관찰, 행상감시를 위한 감독부서, 노동관서, 사회보험 및 사회원조의 담당자, 기타 관청의 구출시설 및 복지사업단체는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행형시설은 수형자의 수용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5조 【교정공무원】 ① 행형시설의 업무는 교정공무원이 수행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는 행형시설의 기타 교정공무원 및 겸직하거나 계약상 의무있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각각의 행형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에 따라 상이한 직무집단의 공무원 수, 다시 말해서 일반교정공무원, 행정담당관 및 작업기사 및 목사,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및 사회복지담당관의 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56조 【행형시설의 감독】 ① 각각의 행형시설에는 직무감독을 위한 차상급 직책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형시설은 상위 직책의 공무원에 의하여 지휘받을 수 있다.

② 행형시설의 장은 대외적으로 그 행형시설을 대표한다. 시설의 장은 다른 교정공무원



의 특정한 책임업무영역이 아니거나 다른 교정공무원의 공동책임으로 위임된 사항이 아닌 전체의 집행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82조 제2항에 의한 검사, 제88조에 의한 특별한 안전조치 및 제103조에 의한 징벌 조치를 지시하는 감독관청의 동의에 의해서만 위임할 수 있다.

제157조 【사제직】 ① 사제는 그때그때 종교공동체와의 협의로 중앙부서 안에 임명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② 종교공동체 소속원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사제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형시설의 장의 동의에 의하여 행형시설의 사제는 임의의 보조사제를 둘 수 있으며 예배 및 기타 종교행사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사제를 초빙할 수 있다.

제158조 【의료조치】 ① 의료조치는 전입의사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조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겸임의사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의무가 있는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자의 간호는 질병간호 기타의 교육경력이 있는 일반교정공무원 중에서도 또한 임명될 수 있다.

제159조 【회의】 집행계획서의 수립 및 조사 그리고 중요한 집행상의 결정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행형시설장의 처우에 결정권이 있는 당사자의 회의를 개최한다.

제160조 【수형자공동책임】 수형자가 그의 개성과 시설의 업무에 비추어 협력에 적합한 공동 이익업무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1조 【소내규칙】 ① 시설의 장은 행형시설의 규칙을 정한다. 이에겐 감독관청의 동의를 요한다.

② 소내규칙에는 특히 다음의 지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견시간, 접견의 회수 및 기간.
2. 작업시간,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
3. 신상, 신청 및 이의의 제출 또는 감독관청의 장에 대한 청원.

③ 소내규칙의 인쇄물은 모든 거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제4절 시설의 자문위원회

제162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행형시설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정공무원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③ 세부사항은 각 주가 정한다.

제163조 【자문위원회의 임무】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집행의 형태 및 수형자의 보호에 협력

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격려와 개선의 조언으로 시설의 장을 후원하며 석방 후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다

제164조 【자문위원회의 권한】 ①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특히 소원사항, 격려사항 및 이의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수용, 작업, 직업교육, 급식, 의료보호 및 처우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행형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수형자 및 수용자를 그들의 거실에서 접견할 수 있다. 의견개진과 서신교류는 감시받지 아니한다.

제165조 【비밀유지의 의무】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그 성질상 비밀로 하여야 하는 모든 업무, 특히 수형자 및 수용자의 성명과 인적 사항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그의 직무 밖에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제5절 행형에 있어서 범죄학적 연구

제166조 【행형에 있어서 범죄학적 연구】 형사학연구부는 연구조직들과 협조하여 집행, 특히 처우방법을 학문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으며 형사재판의 목적을 위하여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제5장 잡칙

##### 제1절 행형시설에서의 유치집행

제167조 【원칙】 행형시설에서의 유치집행에 대하여는 이하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유형의 집행(제2조 내지 제122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 【수용, 접견 및 문서수발】 ① 작업,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제17조 및 제18조) 중의 공동수용은 수형자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허용한다. 형사구금 또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의 중단 중에 유치가 집행되어지는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수형자에게는 매주 1회의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접견 및 서신교류는 행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의 이유상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금지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다.

제169조 【의류, 세탁물 및 침구】 수형자는 안전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형자가 자기 부담으로 세탁, 수선 및 규칙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류, 세탁물 및 자신의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0조 【구입】 수형자는 식료품, 기호품 및 상당한 정도의 건강식품을 행형시설의 주선을 통하여 자기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

### 제2절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및 강제를 위한 구금의 집행

제171조 【원칙】 법원이 명령한 질서구금, 보안구금, 강제구금, 강제를 위한 구금에 대하여는 구금의 본질 및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이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자유형의 집행(제3조 내지 제122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2조 【수용】 작업, 자유시간 및 휴식시간(제17조 및 제18조)중의 공동수용은 수형자의 사전동의에 의하여만 허용된다. 금고형의 중단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중에 질서구금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73조 【의류, 세탁물 및 침구】 수형자는 안전상의 이유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형자가 세탁, 수선 및 규칙적인 갈아입기를 자변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자신의 의류, 세탁물 및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4조 【구입】 수형자는 식료품 및 기호품과 아울러 건강식품을 상당한 범위에서 자변으로 행형시설의 주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175조 【작업】 수형자는 작업, 작업 또는 보조업무를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3절 소년원 및 미결구금집행에 있어서의 보수

제176조 【소년원】 ① 소년원에 있는 수형자가 그에게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도급작업 및 일관작업에 관한 소년노동보호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당한 임금을 받는다. 수형자가 기타 그에게 할당된 작업 또는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형자는 이것이 그의 작업 및 작업의 종류에 부합하는 한 본항 1문에 의한 임금을 받는다.

② 그 자신에 있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할당받지 못한 근로능력있는 수형자, 그에게 제45조 제2항의 요건이 있는 병자인 수형자 및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임신 중의 모는 결손보상금을 받는다. 결손보상금의 가격 및 기간은 이 법 제45조 제3항 내지 6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③ 불구를 이유로 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에게 결손보상금 또는 그 이상 어느 것도 받지 못한 수형자는 필요한 경우 상당한 정도의 용돈을 받는다. 본조 제1항 2문에 의한 작업 및 보조업무에 대하여 노임을 받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④ 기타 이 법 제44조 및 제49조 내지 제52조가 준용된다.

제177조 【미결구금】 미결수형자가 그에게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는 제43조에 상당한 노임을 받는다.

### 제4절 행형시설에서의 직접강제

제178조 ① 직접강제에 관한 본법 제94조 내지 제101조는 다음 항에 의하여 행형법(제1조)의 적용범위 이외에 교도관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② 미결구금의 집행 및 형사소송법 제126a조에 의한 일반적인 수용의 집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5항 및 제6항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소년구금, 형벌구금 및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강제를 위한 구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주의 방지 또는 재체포(제100조 제1항 3호)를 위하여 총포가 사용될 수 없다. 미결구금, 형사구금,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수용의 중단에 있어서 형벌구금 또는 질서구금, 보호구금, 강제구금, 강제를 위한 구금이 집행되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주법은 특히 소년형사범의 집행에 있어서 총포사용권의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 제5절 연방법과의 조화

제179조 내지 제189조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다)

### 제6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제190조 내지 제194조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다)

제195조 【기여금의 유보】 집행관청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및 연방보험 및 연방 노동시설을 위하여 기여금을 출연해야 하는 한 집행관청은 수형자가 고용인으로서 노임, 직업양성 기간 중의 특별부양수당 또는 결손보상금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기여금에 대한 수형자의 출자분에 상당하는 기여금을 이들 보수에서 유보할 수 있다.

### 제7절 기본권의 제한

제196조 【기본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기본법 제2조 제2항 1호 및 제2호(사람의 신체의



불가침 및 자유) 및 제10조 제1항(서신,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은 그 적용이 제한된다.

제197조 【베를린조항】 제3경과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은 1952년 1월 4일부터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발해지는 법령은 제3경과조치법 제14조에 의하여 베를린주에서 그 적용이 있다.

제198조 【시행】 ① 이 법은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제199조 및 제201조에 관계없이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1. 다음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 작업할당 제39조 제1항 : 임의적 작업조건 제41조 제2항 : 재교육 조치시에 있어서의 동의 필요성 제149조 제1항 : 작업의 운영,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제162조 제1항 : 고문회 2. 및 3. (삭제)

③ 다음의 규정은 특별연방법에 의하여 시행되어진다. 제5조 제1항 : 수용절차상의 격리 제41조 제3항 : 기업체에서의 작업시 동의 필요성 제45조 : 결손보상금 제46조 : 용돈 제47조 :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 제49조 : 생활비 제50조 : 구금비용 제65조 : 제2항 1호 병원체류시의 의료보험급부 제93조 : 제2항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의 징발 제176조 : 제2항 및 제3항 소년형집행에 있어서의 결손보상금 및 용돈 제189조 : 비용에 관한 명령 제190조 : 1호 내지 10호, 13호 내지 18호, 제191조 내지 193조 사회보험

④ 제41조 제3항(기업체에서의 작업시 동의 필요성)의 시행에 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제1항 수용절차상의 격리시행 및 제201조 1호-개방집행에 있어서의 수용의 계속 적용에 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다

제199조 【경과문조치】 ① 1977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42조 작업의무의 면제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① 수형자가 제41조 제1항 2문에 의하여 1년의 기간으로 할당받은 작업 또는 보조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수형자는 작업의무 중에 18일의 근무일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휴가가 작업시간에 들어있고 생명에 위험을 주는 질병 또는 친족의 사망을 사유로 하여 허여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 중의 휴가(제13조, 제35조)는 면제기간에 산입된다.

③ 수형자는 면제기간 동안에도 그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급료를 계속하여 받는다.

④ 형사집행 이외에 작업조건상의 휴가규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56조 제1항에는 다음의 3문을 포함한다.

“비독립행형시설의 장으로서 법관 또는 검사가 임명될 수 있는데 주법원 소재지에 있는 비독립교도소에는 먼저 검사장이 임명되고 주법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주법원 소재지의 비독립교도소에는 구법원장이 임명된다.”

3. 제162조 제1항 고문회에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① 행형시설에는 고문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1977년 1월 1일부터 특별연방법의 시행시까지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제46조 용돈에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수형자가 그의 고의·과실없이 노임 및 직업양성기간 중의 특별부양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게 상당한 용돈이 주어진다.

2. 제47조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에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① 수형자는 매월 이 법에 규정된 보수의 3분의 2(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 및 용돈(제46조)을 구입(제22조 제1항) 또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의적 작업조건에 있거나(제39조 1항) 자발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제39조 제2항) 수형자에게는 그의 보수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이 정해진다.”

3. 제50조 구금비용에는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은 수형자로부터 구금비용이 징수되지 아니한다.

② 임의적 작업조건에 있는(제39조 제1항) 수형자로부터는 라이히보험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현물급여의 평가를 평균하여 확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구금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전년도 10월 1일에 적용하는 현물급여평가 기준에 의한 매년도 평균노임을 확정하여 이를 연방관보에 공고한다. 구금비용은 보수 중에 압류할 수 없는 부분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 또는 생활부조금의 부담분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자발적 작업(제39조 제2항)은 본조 제2항에 열거된 문의 범위내에서 수형자가 구금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4. 제93조 제2항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의 징발은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② 이러한 요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수형자가족부양급부금(제47조)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30독일마르크가 또한 청구될 수 있다.

5. 제176조 제3항 소년형사집행에서의 용돈은 다음의 문언을 포함한다.

③ 수형자가 그의 고의 과실없이 노임 및 직업양성기간 중의 특별부양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가 필요하는 경우 그에게 상당한 정도의 용돈이 주어진다.

6. 연방노동시설을 위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이 분담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라이히보험법 및 피용자보험법의 규정이 제190조 및 제191조의 문언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200조 【작업보수의 범위】 ① 제43조에 의한 보수의 책정은 다음 연도의 피교육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및 피고용자의 전체 연금보험 피보험자의 평균보수에 대하여 5퍼센트를 기



초로 한다.

제201조 【기존행형시설을 위한 경과규정】 이 법의 효력발생 전에 그 설립이 개시된 행형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공간적, 인적 및 조직적인 행형시설의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하는 한 제10조와는 별도로 수형자는 폐쇄행형시설에만 수용될 수 있다.
2. 공간적 인적 및 조직적인 행형시설의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하는 한 제17조와는 별도로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중에 공동수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시간 중의 공동수용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만 제한될 수 있다.
3. 행형시설의 공간적인 상황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18조와는 별도로 수형자는 휴식시간 중에도 공동으로 수용될 수 있다. 공동수용은 1985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된다.
4. 제143조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도로 행형시설은 개별적으로 시정된 처우의 필요성 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형자가 전망있는 보호집단 및 처우집단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직되고 분류되어야 한다.
5. 제145조와는 별도로 행형시설의 수용능력은 본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다.

---

### 구금시설실태조사보고서

발 행 2002. 10. 28.  
발 행 처 서울지방변호사회  
발 행 인 박 재 승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TEL : 3476-6000)

---

〈비매품〉